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남 해 군

목 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자체)	3
□ 중소기업육성기금(법정임의)	8
□ 재난관리기금(법정의무)	13
□ 사회복지기금(자체)	19
□ 여성발전기금(자체)	26
□ 식품진흥기금(법정의무)	32
□ 마늘명품화기금(자체)	38

기초수급자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남해군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지급조례
- 설치년도 : 1991년
- 사업의 목표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옳바른 기초수급 중·고·대학생의 가계부담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
- 기금액 : 1억 원
-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8	111	111	0	108	111	111	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저소득층의 학업의욕 고취 및 가계부담경감을 위하여 중학생 3명 700천원, 고등학생 3명 1,400천원, 대학생 1명 5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세부지출 내역

구 분	인원(명)				지출액(천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계	7	3	3	1	2,600	700	1,400	500
특별장학생	2	1	1	-	900	300	600	-
일반장학생	5	2	2	1	1,700	400	800	500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규모가 작고(1억원)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으로 기금운영에 어려움 예상
=> 유사기금과의 통합을 통한 기금규모 확대
- 기초수급자의 경우 국가 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가 많아 대상자 선정이 어려움 설정임.
=> 선정 대상자 수를 줄이고 학생별 지원 금액을 인상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1	3.1	100%	3.1	2.6	8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14년 당초 7명 3.1백만원의 지원계획이었으나, 대학생 1명 전출로 인한 자격변동으로 당초 사업목표 대비 84%이나, 수혜대상자의 학업의욕 고취와 가계 부담경감의 효과는 달성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 (3.1백만원, 7명)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 (3.1백만원, 7명)	100%
'14년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 (3.1백만원, 7명)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 (2.6백만원, 7명)	8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남해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지급조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p>1) 일반장학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이 바른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1회 10~50만원까지 2회 지급 <p>2) 특별장학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실기 및 예체능 관련 대회에서 입상 하였거나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도움이 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1회 15만원~30만원 까지 2회 지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기금회계사무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미가입	경남도 감사
	'13	해당사항 없음	
	'14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2,600,000원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 시 기금 설립의 순수목적을 지속하기 어렵고 탄력적 운영이 어려움. 유사기금과의 통합이 합리적임.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사회복지기금		사업내용은 상이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	-
타 기금	없음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당초 1991년 조성당시 1억원의 출연금 이후 증액부분 현재까지 없는 상태로 규모면에서는 매우 협소한 실정임
- 매년 약 2.7백만원의 이자소득에 의존하여 집행하는 실정으로 기금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재정의 열악한 사정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기금 통합 및 일반회계 전환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유사기금(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 시 기금목적 달성에 유리하며, 유사성격의 기금의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110,941,747	%	111,309,000	%	110,554,33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7,476,867	96.9	107,839,000	96.9	107,761,777	97.5
	예수금						
	이자수입	3,464,880	3.1	3,470,000	3.1	2,792,560	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0,941,747	%	111,309,000	%	110,554,337	%
	비용자성사업비	3,100,000	2.8	3,100,000	2.8	2,600,000	2.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7,841,747	97.2	108,209,000	97.2	107,954,337	97.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합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남해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010.11.30 조례제1928호)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 판매,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본 기금 조성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응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 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05	125	6	119	1,024	236	27	20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 판매,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여 설치되었음
- 매년 5억원의 재원으로 10년내 기금 목표액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사정 상 2014년말까지 이자 발생분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2014년 출연금 1억원을 합한 총9억5천만원임

- 2013년 3개 업체 융자금 2억5천만원, 2014년 1개 업체 융자금 2억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3%(2014년 5백만원)를 지원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기금 조성액 부족으로 예금이자 발생분이 적어 사업시행 어려움
 - 10년간 50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5억원 당초예산 반영 노력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관내 중소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 없는 소기업이 대부분임
 - 자금사정, 인력 공급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정부 3.0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마련 세부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9	2	6.9	30	6	2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목표
- 2014년도 기금 적립금을 포함하여 이자 발생분으로 총4개업체 융자금 4억5천만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6백만원을 지원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29백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2백만원, 3개업체)	6.9%
'14년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30백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6백만원, 4개업체)	2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확보

○ 기금 설치목적 및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남해군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군내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대출금리 이자 차액 보전	기금 주요 목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사항에 크게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分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미구성	구성완료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이자보전사업	30백만원	조성된 기금의 이자발생분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해야 하므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상
합계	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50억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매년 당초예산에 최소 5억원의 적립금 확보가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733,161	%	908,012	%	1,030,532	%
	전입금	200,000	27.2	150,000	16.5	100,000	9.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12,150	69.8	733,161	80.8	905,677	87.8
	예수금						
	이자수입	21,011	3.0	24,851	2.7	25,855	2.5
지 출	기타수입						
	합 계	733,161	%	908,012	%	1,030,532	%
	비용자성사업비			2,124	0.23	5,626	0.5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10	0.03	210	0.02	280	0.02
	예탁금						
	예치금	732,951	99.97	905,678	99.75	1,024,626	99.44
	차입금 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합계)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합계)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 계획 수립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 설치년도 : 1998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73	243	150	93	866	299	548	△24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개설되어 2005년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도비 보조금 및 자체 출연금으로 2014년 현재 866백만원의 기금을 형성하였음.
- 2014년도 이자수입은 33백만원이었으며, 2015년도 이자수입은 15백만원으로 예상됨.
- 2012년에는 총사업비 25백만원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3명,

3.8백만원) 및 남면 숙호마을 등 9개소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20백만원)를 추진하였고,

- 2013년에는 총사업비 400백만원(도비220, 군비180)으로 소류지보강공사(가천, 수곡, 채양, 금양) 4개소의 보강공사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하류부 농경지 및 주택,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총사업비 5백만원(도비2.75, 군비 2.25)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재난에 취약한 92가구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였음.
- 2014년에는 총 사업비 182백만원(도비100, 군비82)으로 소하천 합류부분 병목현상으로 인해 강우시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되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인 남면상습침수지역 교량(죽전교) 재가설을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음

○ 문제점 및 대책

- 남해군 재정이 열악하여 법정기준액 이상으로 전입금 확보가 어렵고, 은행 금융상품의 금리가 점차 하향하는 추세로, 도비 보조없이 중요 사업을 시행하기 힘듦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사업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임.

○ 기금운영의 효율성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여 효율성이 높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5	347	85.67	182	116	6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1998년도 기금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였고 소하천 합류부분 병목현상으로 인해 강우시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되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교량 재가설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소류지보강공사 4개소 실시 (400백만원)	○소류지보강공사 4개소 실시 (342백만원) - 수곡, 채양, 가천, 금양 소류지	100%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5백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 연기감지기 소화기 설치(92가구)	
'14년	○남면상습침수지역 교량 재가설 설치공사(182백만원)	○남면 죽전교 재가설 설치공사(116백만원)	6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남해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재난예방 및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 남면상습침수지역 교량 재가설 설치 공사 등 계획된 사업 65% 달성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종합감사 - 기금관리 및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 · 기금의 결산 및 성과 등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회 제출 	2012.8.10 조치완료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남면상습침수지역 교량 재가설 설치공사	182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은 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중 긴급을 요하나 재정부족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수립하므로 기금형태 유지 필요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관련법상 법정적립액이 정해져 있어 해당금액만큼 자체 출연(현재 1억원 선)하고 있으며, 기금이라는 예산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자금확보가 필요 하므로 집행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도 기금 보조(55%내외)를 통해 기금사용에 대한 자금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도 아래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남해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정기금으로 지속 존치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782,945	%	1,121,127	%	1,016,709	%
	전입금	101,000	13	105,000	9	111,000	11
	보조금	16,000	2	222,750	20	100,000	1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62,293	85	759,150	68	772,889	76
	예수금						
	이자수입	3,652		34,227	3	32,820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82,945	%	1,121,127	%	1,016,709	%
	비용자성사업비	20,000	3	347,034	31	115,724	1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3,795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59,150	97	772,889	69	866,404	85.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204	0	34,581	3.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합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00.8.8 조례 제1567호)
- 남해군의 노인·장애인·모자가정·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
-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노인 등의 사회활동 및 취미와 건강생활 등의 지원
 - 노인 등의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각종 행사의 지원
 - 노인 등과 직접 관련된 단체 및 시설종사원 교육
 - 노인 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의 확충 지원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정의 재활 또는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 기타 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목표액 20억 달성 : 2014년 12월말
- 사회복지기금사업 추진 : 2014년부터 현재 (3개 계정 7개 사업분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52	151	45	106	2,058	52	47	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부터 국·도비, 군비 보조금을 출연해 2014년까지 20억원의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적립하여 왔으며, 3개 계정에 7개 사업의 사회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2014년도 총사업비는 46백만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10백만원)와 미등록 경로당 난방 유류대 지원(24개소, 9.984백만원)과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3백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4백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유류대 지원(40세대, 4백만원) 가정위탁·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유류대(30세대, 7.5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고 신입생 교복구입비(25명, 6.25백만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4년도 수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백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51백만원으로 사용 잔액은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2015년도 사용을 위해 보관 중에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수입(현재 금리 1.85%)이 격감하고 있어 앞으로 기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기금운영의 효율성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자수입에 맞게 재원 조성하여 집행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을 계속적으로 존치의 필요성 인정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39	98	46	45	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회복지기금 20억 조성을 위해 2011년도 5억, 2012년도 2억, 2013년도 1억, 2014년에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목표 달성하였음
- 2014년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입금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들과 중증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노력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노인·장애인·아동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골고루 지원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백만원, 770명)	○원쪽과 같음	98%
	○ 미등록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0백만원, 25개소)	○미등록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9.9백만원, 24개소)	
	○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입생교복구입 (6백만원, 24세대)	○원쪽과 같음	
	○ 장애인 경기용 훈체어 구입 지원 (3백만원, 2대)	○원쪽과 같음	
	○ 장애인 건전생활 지원 (4백만원, 200명)	○원쪽과 같음	
	○ 소년소녀가장 동절기 난방비 지원 (7.5백만원, 30세대)	○소년소녀가장 동절기 난방비 지원 (6.9백만원, 28세대)	
	○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백만원, 770명)	○원쪽과 같음	
'14년	○ 미등록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0백만원, 25개소)	○미등록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9.9백만원, 24개소)	98%
	○ 저소득 중증장애인 동절기 난방비 지원 (4백만원, 40세대)	○원쪽과 같음	
	○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입생교복구입 (7.5백만원, 30세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입생교복구입 (6.25백만원, 25세대)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3백만원, 2대)	○원쪽과 같음	
	○ 장애인 한마음대회 지원(4백만원, 200명)	○원쪽과 같음	
	○ 소년소녀가장 동절기 난방비 지원 (7.5백만원, 50세대)	○원쪽과 같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도	비고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567호)	남해군의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취미와 건강 생활 지원 -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각종 행사지원 - 직접 관련된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 각종 편익시설의 확충 지원 - 재활 도는 지활능력을 위한 지원 등 	9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	10	존치	상
② 저소득 중증장애인 난방비 지원	4	"	상
③ 소년소녀가장세대 난방비 지원	7.5	"	상
④ 한부모가정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7.5	"	상
⑤ 노인민속경연대회 지원	10	"	상
⑥ 장애인 한마음대회 지원	4	"	상
⑦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민체전)	3	"	상
합계	4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현재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사업운용을 이자수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기금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도 아래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본 사회복지기금은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음으로 앞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군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금임으로 존치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1,773,349	%	1,991,753	%	2,103,277	%
	전입금	200,000	8.8	200,000	10.1	100,000	4.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523,098	85.8	1,733,954	87.0	1,951,437	92.8
	예수금						
	이자수입	50,251	2.8	57,799	2.9	51,840	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773,349	%	1,951,753	%	2,103,277	%
	비융자성사업비	39,396	2.3	39,944	2.3	44,734	2.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733,954	97.7	1,911,809	97.7	2,058,543	97.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합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1. 10. 12 남해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 제정
- 2002. 10. 1 여성발전기금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 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26	641	14	627	627	116	15	101	

II.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3개분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2014.10.22일~10.23일 2 일간, 37명 참여, 5,000천원), 남해군내 여성을 대상으로 『남해 열린 어머니학교』(2014.11.08~11.29 4주간, 40명 참여, 5,000천원), 한부모가정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돌봄을 돌보다』(3회실시, 100명 참여, 4,000천원) 사업 추진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은 여성리더의 의식변화 및 진취적 마인드 제고 및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남해 열린 어머니학교를 통해 온전한 어머니상 제시 및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역할을 함
- 돌봄을 돌보다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정등 취약계층 여성에게 심신의 휴식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방문돌봄 종사자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	10	85	14	1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3년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으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37명/5백만원), 남해 열린 어머니학교(40명/5백만원), 돌봄을 돌보다(100명/4백만원)으로 총 14백만원 운용함.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실시로 리더의 자세 및 의식변화를 이끌어 냄
- 남해 열린 어머니학교는 아내의 역할, 자녀교육 및 행복한 가정을 제시함
- 목장체험 및 강천산 힐링여행·여행상영등 다양한 방식의 돌봄 프로그램으로 방문돌봄 종사자들에게 호응도 높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7백만원 2세대 8명) ○찾아가는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 (3백만원 관내 초·중·고) ○녹색생활실천사업(2백만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지원사업 (5백만원 2세대) ○찾아가는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 (3백만원) ○녹색생활실천사업(2백만원) 	85%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5백만원, 37명) ○남해 열린 어머니학교 (5백만원, 40명) ○돌봄을 돌보다 (4백만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5백만원, 37명) ○남해 열린 어머니학교 (5백만원, 40명) ○돌봄을 돌보다 (4백만원, 100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기금사업을 통한 목적달성을 정도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남해군여성정책 발전위원회조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 운동 전개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남해 열린 어머니학교 ·돌봄을 돌보다 계획된 사업 100%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기금관리 및 운영 부적정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을 기금운용 심의회에 상정 하지 않고 의회 제출)	2011년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여성발전기금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코자 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 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2002~2007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당초 목표액인 3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타시군에 비하여 조성액이 현저히 적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연간 1천만원 정도로 효율적인 사업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2012년부터 7년간 연간 1억원씩 조성 하여 2018년 10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업무보고 사회복지과 -35847 / 2011.10.17)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 29,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므로 존치하고자 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기재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444,592	%	536,410	%	541,32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33,195	97.4	523,770	97.6	526,181	97.2
	예수금						
	이자수입	11,397	2.6	12,640	2.3	15,148	2.8
지 출	합 계	20,823	%	10,229	%	14,000	%
	비용자성사업비	20,823	100	10,229	100	14,000	1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2001. 8. 9. 조례 제161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 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 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5	9	11	△2	43	8	10	△2	

II.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내 일반음식점 등에 위생도마 100개를 지원(350만원)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업소(32개소)에 소형찬기 960개를 지원(300만원)하였고, 남은음식 제로화 실천 확산을 위하여 남은음식 포장용기 10,000개를 120개소에 지원(500만원)하여 군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였음
- 위생 사각지대인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하여 식품위해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및 스마일음식점 업소에 대하여 복합찬기와 남은음식 포장용기를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음

○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영업 등 식품위생영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위해 예방 교육·홍보와 식품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감시활동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 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10	100	11	11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input type="radio"/> 모범업소 공동친서 등 구입(2.75백만원) <input type="radio"/>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input type="radio"/> 위생앞치마 구입(2.5백만원)	<input type="radio"/> 모범업소 공동친서 등 구입(2.75백만원) <input type="radio"/>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input type="radio"/> 위생앞치마 구입(2.5백만원)	100%
'14년	<input type="radio"/> 모범업소 소형친서 등 구입(3백만원) <input type="radio"/>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input type="radio"/> 위생도마 구입(3.5백만원)	<input type="radio"/> 모범업소 소형친서 등 구입(3백만원) <input type="radio"/>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구입(5백만원) <input type="radio"/> 위생도마 구입(3.5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남해읍 재래시장 내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도마 지원(100개)과 병행하여 사용 중인 위생도마에 대한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ATP)검사를 실시하여 당해업소 영업주의 위생관리 정도를 판단하게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 기금의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남해군식품진흥 기금설치및운용 조례(제1615호)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을 위한 용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지급 ·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100%	

『감사 지적사항 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없음	
	'13년	해당사항없음	
	'14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업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사항없음		법정 사무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예치금, 이자수입 등),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과 군민들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 확충과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기재
 -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제고 등으로 기금수요 사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과징금 수입 등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47	%	46	%	54	%
	전입금						
	보조금	3	6	3	6	3	6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3	92	39	85	45	84
	예수금						
	이자수입	1	2	1	2	1	1
지 출	기타수입	-	-	3	7	5	9
	합 계	47	%	46	%	54	%
	비용자성사업비	8	17	10	22	11	2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9	83	36	78	43	80
	차입금 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마늘명품화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남해군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 보장
- 남해 마늘 명품화를 위한 씨마늘 개선 및 기반조성 등
 - 설치년도 : 2003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 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 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378	184	263	-79	7,300	144	510	-366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03년부터 조성된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을 2009년 남해군 마늘명품화 기금으로 흡수·통합하여 2014년 현재 7,3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2014년은 263백만원으로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472톤 공급을 통한 3년 1주기 단위로 남해군 소요되는 우량 종구공급에 기여하였으며
- 또한, 마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으로 관내 1,900여농가를 대상으로 마늘 1천톤정도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마늘가격 안정 및 농업인 소득보장에 기여 하였음
- 2014년 이자수입은 184백만원이었으며, 2015년도 이자수입은 144백만원이 예상됨

○ 잘된 점, 미흡한 점 등 기재

- 잘된점 : 우량종구 증식단조 10㏊조성으로 82톤과 농가자율교환 물량 4백 여톤을 공급하여 견증되지 아니한 타지역 외지산 대체 씨마늘 생산·공급으로 마늘경영비 절감 효과에 기여 하였음
- 미흡한점 : 우량종구 증식단지 조성사업추진에 있어 우량 종구 확보가 어려워 당초보다 축소되어 사업량이 감소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하였음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마늘명품화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이 당초 계획의 50%이하 일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운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	353	235	510	263	5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03년도 기금을 설치하여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마늘가격 안정화로 재배면적 유지, 확대에 기여함.
- 우량씨마늘 단지 조성으로 품질이 우수한 주아, 생장점마늘 등의 우량씨마늘 공급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input type="radio"/> 마늘재배 기반유지(150백만원) <input type="radio"/> 우량 씨마늘단지 조성(366백만원)	<input type="radio"/> 마늘재배 기반유지(150백만원) <input type="radio"/> 우량 씨마늘단지 조성(203백만원)	100%
'14년	<input type="radio"/> 마늘재배 기반유지(150백만원) <input type="radio"/> 우량 씨마늘단지 조성(360백만원)	<input type="radio"/> 마늘재배 기반유지(105백만원) <input type="radio"/> 우량 씨마늘단지 조성(158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남해마늘명품화 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마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 적이고 안정된 소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해 마늘 명품화를 위한 씨마늘 개선 및 기반조성 -계약재배 활성화지원 -씨마늘증식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늘농가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및 우량 씨마늘 확대 보급을 위한 씨마늘증식 단지(10ha) 조성 - 2개사업 추진 완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없음	
	'13년	해당사항없음	
	'14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	마늘 명품화기금 확보는 농협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사업비 확보 및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금형태 유지 필요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현재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사업운용을 이자수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기금 재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 재원성격 : 출연금, 이자수입
 - 재원조성 : 출연금(남해군 50억, 농협 15억), 이자수입 등
 - 목 표 액 : 70억

※ 기금 운용은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자 수익금 내에서의 활용”을 원칙으로 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 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붙임자료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본 마늘명품화기금은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운용 · 관리조례에 의거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씨마늘 개선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정 기금으로 마늘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		'13		'14년	
수 입	합 계	7,674,871	%	7,731,583	%	7,563,22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434,473	97	7,524,871	97	7,378,764	97.6
	예수금						
	이자수입	240,398	3	206,712	3	184,430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674,871	%	7,731,583	%	7,563,224	%
	비융자성사업비	150,000	2	352,819	5	263,127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524,871	98	7,378,764	95	7,300,097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합계)